

# 예 산 총 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0,200,136	10,506,004
일반회계	324,338,219	9,730,147
특별회계	25,861,917	775,858
기타특별회계	25,861,917	775,858
상수도사업	2,310,807	69,324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90,000	5,700
하수도사업	1,109,574	33,287
수질개선	4,782,182	143,465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56,700	16,701
의료급여기금	602,066	18,062
소득특화사업	4,717,000	141,510
농공단지조성사업	118,800	3,564
공영개발사업	362,584	10,878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1,112,204	333,36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603,67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